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4. 19 선고 2021가합126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4. 5.

판 결 선 고 2022. 4. 19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.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2. 1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지 : 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재판장 판사 강효인, 판사 김정은, 판사 엄현재

